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3년12월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김 진 표
장 관

⊙法律 第7003號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

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의 開始日부터 5年"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최초로 所得이 발생한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 開始日부터 5年"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동호나목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각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등록”을 “설정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源泉徵收하며 所得稅法 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중 “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을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본문 및 단서중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企業證券投資信託”을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證券投資信託業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會社가 당해 受益證券을 還買하는 경우”를 “환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工程改善”을 “공정개선”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製造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의 尖端技術設備”를

"첨단기술설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特定設備投資"를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8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중 "社會間接資本債券"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으로 하고, 동조중 "12年"을 "15년"으로, "社會間接資本債券으로서 2003년 12월 31일"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1項", "算入하기" 및 "아니한"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및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금융기관 및" 및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을 각각 "금융기관과" 및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제2장제5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

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제54조제3항중 "證券投資會社法 제78조제1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年 12月 31日 이전에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로부터 지급받는 配當金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證券投資會社法 第78條第1項 各號"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로, "所得稅法 제94조제1항제3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年 12月 31日까지 企業構造調整專門會社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

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7조중 "證券投資信託市場"을 "투자신탁시장"으로, "2003年 12月 31日"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3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3年 이내"를 "4년 이내"로, "5年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5年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開始日부터 5年이내"를 "개시일부터 4년 이내"로, "그 다음 5年이내"를 "그 다음 2년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所得稅法 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所得稅法 第14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2003年 12月 31日"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업기반공사 또는"을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第31條第4項"을 "제30조·제31조제4항"으로, "제62조 내지 제64조"를 "제63조 내지 제64조"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私立學校"를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으로,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國立大學校病院 및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大學校病院"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을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國立大學校病院,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大學校病院"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중 "公共事業用土地등"을 "공익사업용토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호·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중 "公共事業"을 각각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81조의2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3항 본문중 “年間 7萬2千원”을 “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2003年 12月 31日”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축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제87조의4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라목후단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한다.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제2장제9절에 제8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선박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을 삭제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24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

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제4호 및 제9항제3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⑫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을 "제88조의2·제88조의5"로,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을 "생계형저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9조의3제1항중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5년 1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및 "3억원 미만"을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및 "3억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

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제91조의2의 제목·제1항 내지 제7항중 "證券投資會社"를 각각 "투자회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法人稅法 第51條의2第1項第2號 또는 第54條의 規定에"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로 한다.

제91조의3을 삭제한다.

제92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100分의 20"을 "100분의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100分의 3"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3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

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③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第1號 내지 제3호·제4호의2·제4호의4 및 제9호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까지"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建設用役"을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4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市內버스運送事業用"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5호·제6호 및 제9호"를 "제9호"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5호·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를 "제1항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9호"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중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證券投資信託에 있어서 당해 委託會社"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투자신탁"을 "투자

신탁"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委託會社(綜合金融會社에關한法律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證券投資會社法에 의한 證券投資會社"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하고, 동항제11호중 "證券投資會社法 第78條第1項第1號"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제16호 및 제20호 각목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8호·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26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

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市內버스運送事業用"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하며, 동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15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22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

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6항제3호중 "證券投資會社法 第78條第1項第1號"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7年이내"를 "5년 이내"로, "3年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항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4항제1호중 "3年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4항제2호중 "3年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2호중 "3年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3호중 "3年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第121條의2第1項 各號"를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免除받고자"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로 한다.

②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信用카드 또

는 直佛카드"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

한다.

④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26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第11條"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로,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제26조"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分의 12"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30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조의3, 第10條"를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2"로, "제32조제4항, 제62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30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第11條"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로,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海底租鑛權者"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稅"를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2003年 12月 31日"을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7조의2, 제7조의3, 第10條, 第11條,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로, "4年(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로 한다.

제146조중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제26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附則 제1조제1항 단서중 "2004년 1월 1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하고, 제17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租稅特例制限法 附則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6762호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 부칙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공장 및 본사의 지역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제2호 본문·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3(제1항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외훈련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

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이 법 시행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21조의2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시행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에 관한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투자신탁 및 투자회

사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 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9조(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2항 본문·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하며,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를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5조, 제7조, 제130조 및 제132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 제12조).

라.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

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법 제18조의2).

마.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4조 및 제26조).

바.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의3 신설).

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법 제87조의5 신설 및 제91조의3 삭제).

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항 및 동조제12항 신설).

차. 농·어촌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을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89조의3제1항).

카. 종전에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미만까지 그 배당소득을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등록법인의 모든 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타.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2조 및 제106조제1항제4호·제9호).

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99조의4 신설).

하. 종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조합이 잔여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04조의7 신설).

거.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4조의8 신설).

너. 종전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일정 사용액에 대하여서만 근로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2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일원화 함(법 제126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3년12월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김 진 표
장 관

⊙法律 第7004號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

國稅徵收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중 "100分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징수유예분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하던 종전 5퍼센트의 가산금 부과요율은 시중 금리수준을 감안할 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므로, 이를 3퍼센트로 낮추어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3년12월30일

국무총리 고 건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김 진 표
장 관

⊙法律 第7005號

法人稅法中改正法律

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證券投資信託業法의 적용을 받는 法人의 信託財産"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